

녹화협약서(안)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 대표자를 “계약상대자”라 정하고, OO구청장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화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협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는 성실하게 협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동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명칭) 이 협약은 “OO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녹화협약”이라고 하며,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이라 함은 도로와 인접한 단지내 담장(웬스 등)을 철거하고 녹지조성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협약의 대상지역은 OO구에서 서울시의 지원으로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OO시 OO동 OO번지외 OO필지 $000m^2$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된 사업구역으로 한다.

제5조(협약기간) 동 녹화협약의 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7년으로 한다.

제6조(녹화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에 대하여 담장(웬스 등)을 허물고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한다.(설계도면 및 내역 첨부)
2.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녹화사업 구역 외의 녹지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자체 녹화한다.

제7조(녹화지역의 유지관리) “계약상대자”는 동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조의 목적 및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한다.

1. 식재한 수목이 지역의 환경보전 및 미관풍치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함부로 훼손·철거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향후 재건축 및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식재된 수목과 시설물을 최대한 존치 또는 이식하고, 훼손된 경우에는 같은 수종 또는 시설물의 규격과 수량에 맞게 보식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보식 및 설치의 유예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4. 식재된 수목 및 시설물 훼손예방, 수목 및 초화류 추가 보식, 제초, 청소, 급수작업, 고사목 제거, 동해에 약한 수목 झा싸주기, 병충해관리 등에 노력 한다.
5. 식재된 수목 및 시설물을 사전 협의 없이 훼손 및 철거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반자에게 원상복구를 명하여 원래의 상태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6. 조경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한다.
7. “사업시행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2년)동안 연2회(봄,가을)이상 하자 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를 보수한다.
8. 유지관리는 준공 이후 “계약상대자”가 한다.

제8조(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본 협약내용을 원활하게 이행·관리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제9조(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계약상대자”가 본 녹화협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2/3이상이 동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가 변경 또는 협약을 해지한다.

제10조(협약의 갱신) “계약상대자”는 협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협약갱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협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협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협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협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소유권 등을 양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협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협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위반시의 조치) ① “계약상대자”가 본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반내용을 이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협약기간 7년 내에 담장을 허문 경계에 흰스를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반환하도록 한다.(단, 녹지대 답압방지를 위한 50cm 미만의 흰스는 가능.)

② 토지소유자 이외의 제 3자가 녹지를 훼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 3자에게 지체없이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치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위반상태가 1년 이상을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협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협약내용의 해석과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협약서의 보관 등) 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와 “사업시행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협약대상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 협약 내용을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5년 00월 00일

(계약상대자) 00 주민협의회

대표자 주소

성명

(인)

(사업시행자) 00 구청장

(인)